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86
----------	-------

발의연월일 : 2026. 5. 29.

발 의 자 : 김 현 · 이진태 · 김우영
이주희 · 최민희 · 권향엽
이정현 · 장종태 · 박해철
박민규 · 이훈기 · 김남근
의원(12인)

제안이유

미디어 환경이 OTT, 온라인 중심의 다매체, 다채널 시장으로 재편되고 콘텐츠 시청 행태가 수동적, 실시간 행태에서 능동적, 비실시간 행태로 변화함에 따라 과거의 방송 환경에서 마련된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고 방송사업자의 편성, 제작에 있어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으로써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규제(현행 대통령령에 따라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규제)를 폐지함(안 제69조제3항).

나.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 방송되는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비율 상한 규제를 폐지함(현행 제71조제4항 삭제).

다.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규제를 적용받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전체 방송프로그램 및 주시청시간대 중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규제 대상에서 지역방송사업자 등을 제외함(안 제72조제1항 및 제3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報道・教養 및 娛樂에 관한 放送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放送프로그램”을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로 한다.

제71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放送事業者”를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放送프로그램(이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영화는 제외하며, 이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제72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2.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역방송사업자
3.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7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제108조제1항제4호 중 “제69조제3항”을 “제6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69條(放送프로그램의 編成등) ① · ② (생략) ③ 綜合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u>報道·敎養 및 娛樂에 관한 放送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放送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編成하여야 한다.</u>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主視聽時間帶(이하 “主視聽時間帶”라 한다)에는 특정 放送分野의 放送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 ⑫ (생략)	第69條(放送프로그램의 編成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u> ----- ----- ----- ----- ----- ----- ----- ④ ~ ⑫ (현행과 같음)
第71條(國內 放送프로그램의 編成) ① ~ ③ (생략) ④ <u>放送事業者는 다양한 국제문화 수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간 방송되는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한 國家에서 製作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u>	第71條(國內 放送프로그램의 編成) ① ~ ③ (현행과 같음) <u><삭제></u>

을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編成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 등의 구별기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고,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 등
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第72條(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
램의 편성) ①放送事業者는 해
당 채널의 전체 放送프로그램중
國內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製作한
放送프로그램(이하 “순수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編成하
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⑤ (현행과 같음)

⑥ ----- 제3항-----

-----.

第72條(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
램의 편성) ①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영화는
제외하며, 이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

----- . 다만,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1.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
는 지상파방송사업자
2.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역
방송사업자
3.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

② 삭 제 ③ 綜合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主視聽時間帶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④ (생 략)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2. (생 략) 4. 제6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한 者 5. ~ 7의3. (생 략) 8.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한 者 9. ~ 28. (생 략) ②·③ (생 략)	<u>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u> ③----- ----- ----- ----- -----. <u>다만, 제1항 각 호의 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u> ④ (현행과 같음) 제108조(과태료) ①----- ----- ----- -----. 1. ~ 3의2. (현행과 같음) 4. 제69조제4항----- ----- ----- 5. ~ 7의3. (현행과 같음) 8. ----- 제3항----- ----- ----- 9. ~ 2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